

평창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2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15. 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현행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 중 2014년 1월 1일부터 사용이 폐지된 평창군 종이수입증지와 관련된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민원편의 증진 및 수입증지 운영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폐지 규정(종이수입증지 관련 조항)

- 제4조 내지 제18조
 - ▶ 증지의 발행, 증지의 종류, 규격 및 모양 등 15개 항목
- 제20조 내지 25조
 - ▶ 판매 수익금의 관리 등 6개 항목

나. 신설 및 정비 규정

- 제1조(목적)
 - ▶ 수입증지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
- 제2조(정의)
 - ▶ 수입증지, 수입증지요금기계, 정보처리시스템 등

- 제3조(수입증지에 의한 수수료 납부)
- 제4조(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)
 - ▶ 인증기 등 사용에 관한 규정
- 제5조(관리 책임공무원 지정)
 - ▶ 사용부서의 장, 읍·면장
- 제6조(증지의 규격 및 모양)
 - ▶ 가로 3cm, 세로 3.5cm 녹색 또는 흑색
- 제7조(수입증지 사용 수입금의 정산)
 - ▶ 수입증지 사용 수입금의 정산에 관한 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 2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 : 평창군공고 제2015-758호(2015.7.17.~2015.8.7.) 결과,
특기할 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(기획감사실-8112호, 2015.7.28)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(기획감사실-7974호, 2015.7.24)
- 4) 성별영향평가 : 원안동의(주민생활지원과-42656호, 2015.7.21)
- 5)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: 별첨 1

평창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평창군 수입증지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평창군 수입증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평창군 수입증지(이하 “수입증지”라 한다)란 평창군(이하 “군”라 한다)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요금계기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이미지화한 군 명의의 증표를 말한다.

② 수입증지요금계기(이하 “계기”라 한다)란 인증기, 통합증명발급기,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도장을 찍듯이 찍는(이하 “인영”이라 한다) 기계를 말한다.

③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주민등록관리시스템,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수입증지를 전자이미지화하여 인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.

제3조(수입증지에 의한 수수료 납부) ① 군에 수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서류에 군 명

의의 수입증지를 인영하여야 한다.

제4조(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) ① 인증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평창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로부터 사용인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수입증지를 인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.

1. 수입증지요금
2. 발행기관명
3. 발행연월일
4. 계기고유인영번호 (인증기와 통합발급기만 해당)

③ 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수입증지를 발행하는 경우 군수는 발행기관명, 발행장소, 발행개시일, 계기고유인영번호(인증기와 통합발급기만 해당)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.

제5조(관리책임공무원 지정) 군수는 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 본청(보건소, 사업소 포함)은 사용 부서의 부서장, 읍·면에서는 읍·면장이 책임 관리하도록 한다.

제6조(증지의 규격 및 모양) 증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과 같다.

제7조(수입증지 사용 수입금의 정산) 수입증지 사용 수입금(이하 "수입금"이라 한다)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등의 정산일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납입한다.

② 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 등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부주의로 잘못

인영한 증지는 원본을 결손 처리하고 그 사유를 기입하여 결산자료에 첨부한다.

③ 수입금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각 정보처리장치에서 출력한 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,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 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인가는 이 조례에 따라 받은 것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 조례·규칙과의 관계)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「평창군 수입증지 조례」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제4조(종이 수입증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종이 수입증지는 폐기한다.

[별표 1]

계기 인영 수입증지 규격 및 모양



가로 = 3cm, 세로 = 3.5cm

※ 인영색깔 = 녹색 및 검은색

※ 테두리 : 자을 정함

(별첨 1)

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5항 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이 조례 개정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됨.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재무과장 정성문
연락처	(033) 330-2270

(별첨 2)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재정법시행령

제79조(수입증지에 의한 수입) ①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서 법령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한 것에 대하여는 수입증지로써 이를 수입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즉시 소인(消印)하고 따로 세입징수결정이나 수납절차를 취하지 아니한다.